

2025년 다양성 만화 제작지원(매니지먼트) 공고문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5다양성만화제작지원 ○ 사업목적 : 만화웹툰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소재·장르의 다양성 확보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5. 11. 30. <p>※ 본 공고는 매니지먼트(컨설팅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이며, 제작지원 과제(작품) 선정 공고는 창작자 부문 확인</p>										
지원내용										
번호	구분	내용								
1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개 업체 내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선정 수</th> <th>업체 당 지원금</th> <th>업체 당 관리 과제 수</th> </tr> </thead> <tbody> <tr> <td>매니지먼트</td> <td>6개 내외</td> <td>7000만 원 내외</td> <td>20개 내외</td> </tr> </tbody> </table> <p>※ 창작자 부문 선정 결과에 따라 매니지먼트 부문의 지원규모(지원수, 지원금) 및 관리 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음</p>	구분	선정 수	업체 당 지원금	업체 당 관리 과제 수	매니지먼트	6개 내외	7000만 원 내외	20개 내외
구분	선정 수	업체 당 지원금	업체 당 관리 과제 수							
매니지먼트	6개 내외	7000만 원 내외	20개 내외							
2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웹툰 창작, 유통(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에 전문성 있는 법인사업자를 '매니지먼트'로 선정하여 컨설팅 제공 ○ 매니지먼트와 과제(창작자)를 매칭하여 다양성 만화웹툰 창작자 역량 및 사업화 가능성 제고 								
3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웹툰 창작, 유통(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컨설팅이 가능한 관련 분야의 법인사업자 <p>※ 주관기관 단독 지원만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불가함 ※ 다양성만화제작지원 창작자 부문과 매니지먼트 부문 동시 지원 불가 ※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설립 후 만 3년 이상 된 법인만 지원 가능(공고 마감일 기준)</p>								
4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업체(매니지먼트)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 별 컨설팅계획서 작성/제출/관리 - 협약 과제 제작비 지급 및 집행증빙 - 협약 과제의 컨설팅 결과 리포트 작성/제출/관리 - 협약 과제 결과물 관리 및 우수사례 창출 노력 - 협약 과제 중간점검, 결과평가 및 정산 등 사업관리 일체 ※ 매칭된 창작자(과제)와의 협의를 통해 컨설팅 계획서 작성/제출/관리, 컨설팅 진행 [컨설팅 내용 예시] 기획안/과제 피드백, 투자/제작/유통/사업화 등 후속 계획 수립 지원, 업계 관계자 및 작가 네트워킹 주선 등 ※ 과제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공동 제작 시 세부사항은 저작자 간 합의로 결정 								
5	총사업비 구성	<p>① 담당과제 제작비 우선 편성: 담당 과제 수 * 1800만 원</p> <p>※ 지원금의 대부분이 과제 제작지원금로 지급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부담금 면제</p> <p>※ 매칭 창작자에게 제작지원금 지급 시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p> <p>②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법인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본 사업참여인력 인건비만 인정</p> <p>※ 인건비 내 4대 보험료 지원금 편성 가능(업체부담금 제외)</p> <p>※ 사업참여인력: 해당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직고용 인력(정규, 계약(상용), 일용 등)</p> <p>③ 컨설팅 및 사업수행관리에 필요한 기타 운영비</p>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03.13.(목) - 2025.03.28.(금) 15:00까지**

* 접수기간 외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이메일 등 신청 불가)**

-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kocca.kr>) [알림마당] → [지원공고] 클릭
 - ② [2025년 다양성만화 제작지원(매니지먼트) 공고] 클릭
 - ③ 공고문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 클릭하여 제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④ 공고문 하단의 [e나라도움 바로가기] 클릭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bojo.go.kr>) 접속
 - ⑤ e나라도움을 통한 과제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공고문 하단의 e나라도움사용설명서 참고 바랍니다.
- ※ 접수 마감 임박 시에는 동시접속, 긴급작성 등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자료 누락 등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제출 및 접수 바랍니다.

○ **평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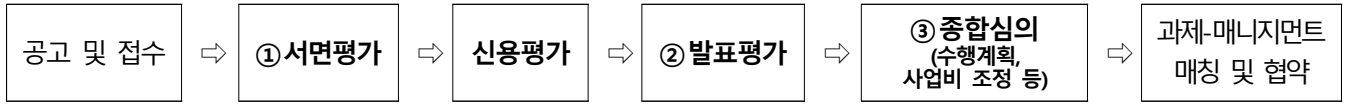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로 e나라도움에 제출
- 파일명 : **25다양성(매니지먼트)_업체명_만화or웹툰.zip**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양식	평가자료	파일형태
필수	지정양식	① 신청서	PDF
		② 수행계획서	PDF
		③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엑셀
		④ 지원사업참가기준 체크리스트	PDF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⑥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⑦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부 발급양식
		⑧ 인감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절차 및 평가안내

○ 선정절차



① 서면평가

- 평가방법 : 접수 완료한 과제 대상으로 서면평가 진행
- 점수산출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상위 2배수 내외에 한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② 발표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질의응답 포함)
- 점수산출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종합심의 대상 선정

③ 종합심의

- (심의방법) 종합점수(=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
- (심의결과) 종합심의(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 확정
 - ※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평가기준 적용 예정(종합점수는 서면평가 가중치 미적용하여 발표평가 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같음)
 - ※ 협약 포기, 해제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종합점수(=서면 40%+발표 60%) 동점 처리기준 및 종합심의 유의사항】

○ 종합점수 동점 처리기준

-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에게 우선순위 부여
- 발표점수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평가기준 중 수행기관(35점)에서 고득점한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종합심의 유의사항

- 종합심의에 따라 협약대상자는 신청 사업비 조정(삭감 등)될 수 있으며, 수행계획서 등 수정을 요청받을 수 있음

○ 평가지표

① 서면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수행기관 (3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계획, 일정 등) 마련 여부	10
	기관전문성	- 유사과제(만화웹툰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수행경험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 만화웹툰 분야 대표추진실적	30
참여인력 (20점)	참여인력 확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적정 인력의 확보 여부	5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만화웹툰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수행경험 여부	15
수행역량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 내용 파악 정도 및 제시한 기획안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수행계획서 완성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 마련 여부 및 질적 완성도	20
사업비 (10점)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 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합 계			100

② 발표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수행기관 (35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계획, 일정 등) 마련 여부	10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추진 의지 명확성	10
	기관전문성	- 유사과제(만화웹툰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수행경험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 만화웹툰 분야 대표추진실적	10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정보 조회 결과	5
수행역량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 내용 파악 정도 및 제시한 기획안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수행계획서 완성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 마련 여부 및 질적 완성도	20
기대성과 (30점)	기대효과	창작자 역량 강화, 다양성 만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 기대 정도	30
ESG (5점)	일자리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2점	2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 : 3점	3
합 계			100

【발표평가 계량점수 안내】

○ 제출대상 :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이후 안내)

○ 계량점수 1) 수행기관(재무건전성 5점)

- 발표평가 참여자 대상 신용조사 진행 예정으로 <신용조사 정보등록>안내에 따라 기한 내 서류 제출
- 미제출 또는 등록 지연 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 주관기관 기준으로 발표평가 시 5점 한도 내 배점 적용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만 평가 대상)
 - AAA~BBB 5점, BB~B 3점, CCC 1점, CC ~ NR 0점

○ 계량점수 2) ESG(일자리 창출 2점, 지역기업 3점)

-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지정양식) 제출 시 2점, 미제출시 0점
- 지역기업 : 지역기업 기준 조건 확인서(지정양식) 제출 및 기준 해당 시 3점, 미제출시 0점
 -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 주관기관의 참여인력(인건비 편성인력) 중 30% 이상이 지역소재 본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

○ 과제-매니지먼트 매칭

- 25다양성만화제작지원 매니지먼트 부문에 선정된 업체는 창작자 부문에 선정된 과제를 매칭받은 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 체결 예정
- 선정 과제의 매니지먼트 매칭 희망순위 조사를 통해 매칭 진행
 - 선정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권 부여
 - 매니지먼트의 TO가 초과되는 경우 과제 성격에 따라 임의 매칭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협약 결과에 따라 지원금 분할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1차 지원금 : 총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30%)

※ 지급 방식(횟수, 금액 등)은 추후 협약 시 안내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일정

번호	구분	내용
1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4~5월 중)	○ 매니지먼트 매칭을 통한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2	중간점검 및 2차 지원금 지급 (8~9월 중)	○ 과제수행 적정성 등 점검 후 통과 과제 대상 2차 지원금 지급
3	결과물 접수 및 결과평가 (12월 중)	○ 완성작 및 결과 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5일 이내 접수 ○ 결과보고서, 산출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 판단

※ 국고지원금은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협약체결 전 집행분 소급 적용 불가**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 만화웹툰산업팀 신소희 주임 (☎061-900-6436, sohees@kocca.kr)
 - ※ 다량의 문의로 담당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화문의 전 공고문 및 지원사업안내서 숙지 부탁드립니다.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 해당 사업은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지원사업 수행자는 근거 법령 및 상위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함
- 해당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공고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및 수행자의 책임임

-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타 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이면계약 체결 등 불공정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함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 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

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